

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123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123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소64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변론 종결 2024. 11. 14.

판결 선고 2024. 11. 28.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소6409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071,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45,0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의 관계 및 이를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경과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그 자녀로 원고, D, E이 있었는데, 원고에게 '자신이 2005. 9. 18.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 21.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2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7.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9.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18. 확정되었다.

2) 한편 망인은 울산 울주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2. 9. 원고에게 2015. 2.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이에 대하여 망인의 채권자인 G는 원고와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8025호로 F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망인 사이의 2015. 2. 6.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21.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나435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7다2303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7. 27. 기각되어, 제1심판결은 2017.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G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19. 3. 7. F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 망인의 소유 명의로 회복되었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망인의 2016. 10. 27.자 사망 및 E의 상속포기를 반영하여 2019. 6. 5.경에서야 F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D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1) 피고는, 위와 같이 F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에서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5.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15306호로 망인을 상대로는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고, 원고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6. 10. 27.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D, E이 위 소송 중 망인의 소송 부분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6. '망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D, E은 피고에게 각 9,49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인과 원고 사이에 F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망인에게 F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D, E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282호로 관련 판결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26. '원고, D, E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773,66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 11. 확정되었다.

다. F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경과 및 피고의 강제집행

- 1) 위와 같이 F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망인의 사망 등을 거쳐 원고와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주식회사 H, G, I, 피고의 신청에 따라 F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및 K, L, M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 2) 피고는 관련 판결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3. 19. 울산지방법원 2020타채1778호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질 출급청구권 중 관련 판결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 14,845,041원(= 관련 판결에 따른 9,4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4.부터 2020. 3. 2.까지의 이자 4,575,378원 + 소송비용액 773,663원) 상당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압류된 출급청구권 부분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3)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21. 1. 20. 실제 배당할 금액 775,885,485원 중 제1순위 채권자인 주식회사 H의 승계인 N 유한회사에게 592,306,620원, 제2순위자 채권자들인 G에게 27,575,277원, I에게 15,753,965원, ○ 주식회사에게 3,042,491원, P에게 30,082,120원, 원고에게 92,277,971원, 피고가 추심한 부분에 관련하여 원고에게 14,845,04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4) 위 배당표 중 원고에게 14,845,041원을 배당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배당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21. 1. 25. 배당금 원금 14,845,041원을 추심하였다.
- 5) 다만, 위 배당표 중 원고에게 92,277,971원이 배당된 부분(피고가 추심한 14,845,041원과 구별하여 배당표가 작성된 부분이다)에 관하여 제2순위 채권자들인 G, P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69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2. 4. 26.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통모하여 작출한 허위의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277,971원을 삭제하고, G에 대한 배당액 27,575,277원을 68,334,457원으로, P에 대한 배당액 30,082,120원을 81,600,911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22나1219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3. 3. 6. 'G, P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G에 대한 배당액 27,575,277원을 50,168,375원으로, P에 대한 배당액 30,082,120원을 63,407,6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277,971원을 36,359,326원으로 각 경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한정승인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1) 망인이 2016. 10. 27. 사망하자, 상속인 중 E은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4228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6. 11. 29. 수리되었다. 원고는 2017. 1. 25. 위 법원 2017느단319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7. 9. 22. 수리되었으며, 다른 상속인인 D도 위 법원 2017느단280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1. 1. 12.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0754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9. '원고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망인의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채권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20. 3. 19.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1.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인 원고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채무의 상속을 전제로 한 관련 판결을 기초로 해서는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14,845,041원을 추심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14,845,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은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을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배당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며, 이를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의 원고의 배당금은 원고가 아닌 배당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추심을 완료한 14,845,041원이 전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한정승인이 유효한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가 2017. 1. 25.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9. 22.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리고 관련 판결은 망인 채무의 상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해서는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배당요구를 한 채권의 허위성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망인의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채권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관련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당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다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관련 판결 외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집행권원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관련 판결 사건을 당사자로서 수행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자신의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특히 관련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소송수계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분에 기해서는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즉,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은 추심금 14,845,041원 중 소송비용 채무 773,663원을 공제한 나머지 14,071,378원이 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의 원고의 배당금은 원고가 아닌 배당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 즉 피고가 추심한 추심금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전액 출급할 수 있었던 것이니 피고가 추심을 통해 얻은 이득만큼 원고에게 손해가 일응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갑 제10호증 참조)]가 원고의 위 배당금 수령이 권리 없는 몫을 배당받은 것이라며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071,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단순승인 의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한정승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인 F 부동산과 망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대여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판결에 기한 금전 채권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되는 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2015. 2. 9. 망인으로부터 F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망인의 채권자인 G가 원고와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8025호로 F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망인 사이의 2015. 2. 6.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21. 제1심에서 승소하고 그러한 제1심판결이 원고의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을 거쳐 2017. 7. 31. 확정되었으며, 피고 역시 관련 판결에서 망인을 상대로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더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2015. 2. 6.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2017. 8. 16. 피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2017. 9. 13. 그러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Q 외 6명에 대하여 대여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6개의 승소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이하 6개의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이라 한다)을 차례로 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17. 1. 25. 한정승인 신고시 F 부동산 및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3. 17. 6개의 승소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정본을 발급받고, 2018. 1. 25.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5가단2289	Q (R)	25,000,000 (연대하여 20,000,000)	2015. 4. 28. 선고 2015. 6. 10. 확정
2015가단5448	S	56,000,000	2015. 7. 16. 선고 2015. 8. 6. 확정

2015가단2289	Q (R)	25,000,000 (연대하여 20,000,000)	2015. 4. 28. 선고 2015. 6. 10. 확정
2015가합747	T	288,000,000	2015. 8. 28. 선고 2015. 9. 24. 확정
2015가소28032	U	10,000,000	2015. 10. 27. 선고 2015. 11. 13. 확정
2015가단2296	V	20,000,000	2015. 10. 30. 화해권고결정 2015. 11. 24. 확정
2015가소28070	W	16,000,000	2015. 12. 22. 선고 2016. 1. 12. 확정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내지 앞서 든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소송이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유효한데, 한정승인 신고시에는 F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재산목록에 F 부동산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재산의 기입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9. 3. 7.에 이르러서야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기한 G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고 앞으로 2019. 6.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③ 이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F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이 진행된 점, ④ 원고는 G 및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모두 '망인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또는 그 중 일부) 등을 갖고 있으므로 망인이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원고가 한정승인 신고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 일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의 변제기일, 소송진행 상황에 비추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이 배척된 점, ⑤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의 확정시기가 망인의 사망 이전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이 이미 회수된 것인지 여부와 회수 가능성 등을 확실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F 부동산,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1)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제1상계 항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해 관련 판결에 의하여 9,4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4.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5154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한정승인이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채무인 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의 고유채권이므로, 둘 사이의 상계는 제3자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제2상계 항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사건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망인에게 지급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는 망인이 원고를 상대로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익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는 원고와 동순위로서, 피고가 추심한 금원 이상으로 아직 채권을 다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존재하므로 그 손해가 망인에게 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71,3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박성규

판사설정은

1)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산가정법원 2021. 3. 30.자 2021즈기6 결정으로 F 부동산이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승인 재산목록이 결정되었고, 부산가정법원 2021. 6. 29.자 2021즈기3314 결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 전부가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승인 재산목록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